

춘천지방법원 2020. 9. 9 선고 2019가단50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망 B의 상속인

1. C
2. D
3. E
4. F
5. G

변론 종결2020. 8. 12.

판결 선고2020. 9. 9.

주 문

1.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H, I, J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7. 4. 13. 접수 제81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E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윤이나

별지